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위기지역 내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15호)
- 이재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1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의안번호 22155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3.
3. 회부연월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

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 51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번호 22160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주력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 관련 지역 내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두 개정안은 면제 대상 지역의 범위에서 차이¹⁾를 보이고 있으나, 입법 목적과 개정 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검토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성훈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제51조(부담금) ① (생략)	제51조(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제51조(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4.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 산업위기 대

1) 박성훈의원안은 위기 징후가 나타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포항, 광양, 여수, 서산 등)'과 이미 위기가 발생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 울산동구, 거제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재관의원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만을 면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현행	박성훈의원안	이재관의원안
③ ~ ⑦ (생략)	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공급하는 전기
	③ ~ ⑦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별 주요 특징 및 차이점 비교]

구분	박성훈의원안	이재관의원안
면제 대상 지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법 제8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법 제10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법 제10조)
면제 대상 전력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입법 취지	장기적인 지역 경제 침체 해소 및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단지 사업성 악화 방지 및 경쟁력 회복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제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반면, 국제 연료 가격 안정화로 민간 발전사가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²⁾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가와 판매

2)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도매단가로, 국제 유가, LNG 및 석탄 가격 등 글로벌

가 간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짐에 따라 위기 업종이 밀집한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의 체감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전력도매가격(원가)과 산업용 전기요금(판매가) 격차 현황]

(단위: 원/kWh)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1월 평균)
전력도매가격 (SMP, 원가)	196.65	167.0	125.45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가)	119.0	154.0	181.0
격차 (마진)	△77.65	△13.0	+ 55.55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정책(Strompreispaket)³⁾을 시행 중임을 감안할 때, 주력 산업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특별지역 내 기업들의 고정비용(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려는 본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법정 부담금 면제가 타 지역 전기사용자와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산업기반기금⁴⁾의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즉각적으로 연동되어 산정됨.

3) 독일의 산업용 전력요금 패키지(Strompreispaket): 2023년 독일 연방정부가 자국 제조기업의 보호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약 280억 유로를 투입하여 에너지집약 산업 제조업체의 전기세(Electricity Tax)를 약 97% 대폭 할인(1.537 유로센트/kWh → 0.05 유로센트/kWh)해주는 정책.

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2025년 7월 기준 2.7%)을 곱하여 부과·징수함.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첫째,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효과 및 요금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도매가격(SMP)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지속 상승하여 가격 구조의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의 2.7%에 해당하는 전력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예상되는 요금 절감액은 다음과 같음.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 및 개정안 통과 시 예상 절감액 비교]

(단위: 원/kWh)

구 분	금 액	비 고
(A) '22년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	62.0	119.0원('22년) → 181.0원('24년)
(B) 개정안 통과 시 예상 절감액	4.9	181.0원의 2.7%(전력기금 요율) 적용
절감 비율 (B / A)	7.9%	요금 인상폭 대비 기금 면제액 비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위 표와 같이 2.7% 면제 적용 시 단가 기준 절감액은 1kWh당 약 4.9원(인상폭의 7.9% 수준)으로 산출됨.

개정안은 위기 지역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고정비용 감면 혜택을 주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다만, 1kWh당 55원 이상 벌어진 원가-판매가 간의 구조적 괴리를 고려할 때, 기금 면제 조치와 더불어 근본적인 요금 산정 체계의 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기금 수지 악화 및 정부 핵심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 확충,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수행을 위한 핵심 재원임.

앞서 언급된 위기 지역 기업들의 비용 절감액은 기금 운용 주체인 국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세입 감소로 직결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박성훈의원안 기준) 통과 시 포항, 광양, 군산 등 위기 지역 내 산업용 전력 사용 업체(약 1만여 개사)에 대한 기금 면제로 인해 연간 약 2,300억 원 이상의 기금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 통과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감소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5년 누적
세입 감소 예상액	2,332	2,346	2,369	2,385	2,416	11,84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현재 전력기금 효율 2.7% 적용 기준)

향후 5년간(2026~2030년) 누적 1조 1,800억 원 규모의 자체 수입이 감소할 경우, 정부는 기존 계획된 지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추가적인 차입(예수금)을 확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기금의 재정 건전성 및 운용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제시함.

셋째, 타 전기사용자와의 조세 형평성 및 대안적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⁵⁾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사용자가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공적 자금임.

특정 지역의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기금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비위기지역의 기업이나 일반 가정(주택용) 등 타 전기사용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현재 법률상 기금 면제 대상⁶⁾은 자가발전 설비나 구역전기사업 등 전력계통의 부담을 덜어주는 '특정 설비 및 공급 방식'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 상황'을 이유로 면제한 입법 사례는 없음.

5)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예외적 면제는 이러한 공정성(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엄격한 검토가 요구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 확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전력기금을 활용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